

## 제27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 목 차

- 제27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의안 검토보고서..... 2면
- 제27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발의 의안..... 13면
- 제27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계획..... 63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3. 10. 12.(목)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 제27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 성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의원외6인】
○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김종식의원외6인】
○ 성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익봉의원외6인】
○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 주 군 의 회

# 성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 안 자 : 김경호 의원 외 6인

## 2. 제정이유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4. 참고사항

- 예고기간 : 2023. 9. 26. ~ 10. 4.
-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고독사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로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방문간호서비스,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지원하여 ‘고독사 예방’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고독사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 안 자 : 김종식 의원 외 6인

## 2. 제정이유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용도를 완화하여 생산 및 직거래 판매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4. 참고사항

- 예고기간 : 2023. 9. 26. ~ 10. 4.
- 관계법령 :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용도를 완화하여 생산 및 직거래 판매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성주읍, 선남면, 대가면, 초전면 4개 읍면은 참외산업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10개 읍·면 전체가 참외산업특구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해당 지역에서 농지를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농민들에게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자 : 장익봉 의원 외 6인

## 2. 개정이유

입영지원금 신청 기간을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제2조 제3호 “지급기준일”에 대한 정의 신설
- 제4조제2항 중 “성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를 “성주사랑 상품권을 1인당 20만원 지급할 수 있다”로 지급금액 명시
- 제5조제1항에 지원금 신청 기간을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

## 4. 참고사항

- 예고기간 : 2023. 9. 26. ~ 10. 4.
- 관계법령 :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나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 입영지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성주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를 격려하기 위한 내용으로,
- 입영지원금을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성주사랑 상품권을 1인당 20만원 지급한다고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분명하지 아니한 지급기준일을 명확히 정의하여 입영지원금 신청자들이 입영지원금 지급 시기를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을 격려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자 : 성주군수

## 2. 개정이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하고, 지역 내 복지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대표협의체 운영 규정 신설(안 제3조)
-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14조)
-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록 규정 신설(안 제15조)
- 의결사항의 처리 규정 신설(안 제16조)
- 사무국 규정 신설(안 제17조)
- 협의체 운영지원 규정 신설(안 제18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시행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 기 타

- 입법예고 : 2023. 6. 23(금) ~ 7. 12(수) / 20일간
- 규제심사 : 해당없음 [기획예산실-6608(2023.6.12.)]
-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가족지원과-26965(2023.6.1.)]
-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동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자 : 성주군수

### 2. 개정이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위치정보 요청 및 수당지급 규정 신설(안 제10조의 2항, 제 11조의 3, 4 항)
  - 개인 위치정보 요청 제공 및 이용 추가
  - 비상근무 시 수당 상한 제한 해제 규정 및 휴무 규정 추가
-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안 별표 1 ~ 4)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제심사: 해당없음[기획예산실-6610(2023.6.12.)]
- 성별영향평가분석: 해당없음[가족지원과-27543(2023.6.7.)]
- 입법예고: 2023. 7. 27. ~ 2023. 8. 16.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성주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 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 및 제공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과 2차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 제5항에 따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사기진작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3. 10. 12.(목) 10:30

성주군의회의 본회의장

# 제276회 성주군의회의(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의 및 제출 의안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1. 성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의원외6인】
2.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김종식의원외6인】
3. 성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익봉의원외6인】
4.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5.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 주 군 의 회

# 성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3년 9월 일
발의자 : 김경호, 도희재, 구교강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이화숙

## 1. 제정이유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조 례 안 : 불 임

## 4. 참고사항

- 가. 예고기간 : 2023. 9. 26. ~ 10. 4.
- 나.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군수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독사 위험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민간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의료지원 및 돌봄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3. 청장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4. 방문간호서비스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상담
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관계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김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3년 9월 일
발의자 : 김종식,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여노연, 장익봉 이화숙

## 1. 제정이유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용도를 완화하여 생산 및 직거래 판매 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바.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조 례 안 : 불 입

## 4. 참고사항

- 가. 예고기간 : 2023. 9. 26. ~ 10. 4.
- 나. 관계법령 :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6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를 다음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에서 특구사업을 위해 생산 및 직거래 판매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농지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특구사업으로서 타당한지의 여부

7.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정지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 내용이 제3조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관계 법령****▣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 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 농지법 시행령**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

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7.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그 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8.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 제공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②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③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轉用)을 허가할 수 있다.

# 성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익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3년 9월 일
발의자 : 장익봉,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종식, 여노연 이화숙

## 1. 개정이유

입영지원금 신청 기간을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2조 제3호 “지급기준일”에 대한 정의 신설
- 나. 제4조제2항 중 “성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를 “성주사랑 상품권을 1인당 20만원 지급할 수 있다”로 지급금액 명시
- 다. 제5조제1항에 지원금 신청 기간을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

## 3. 조 례 안 : 불 입

## 4. 참고사항

- 가. 예고기간 : 2023. 9. 26. ~ 10. 4.
- 나. 관계법령 :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입영지원금 신청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된 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성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를 “성주사랑상품권을 1인당 20만원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중에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지급기준일”이란 입영지원금 신청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된 날로 한다.</u></p>
<p>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u>성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u></p>	<p>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성주사랑상품권을 1인당 20만원 지급할 수 있다.</u></p>
<p>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u>&lt;단서 신설&gt;</u></p> <p>②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u>제4조</u>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군수에게 명단을 보내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 ----- ----- ----- ----- <u>.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u></p> <p>② ----- ----- <u>제3조</u>----- ----- -----.</p> <p>③ (현행과 같음)</p>

**참 고****관계 법령****▣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 병역법 시행령**

제21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성주군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 1. 제정이유

공공복지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지속가능한 지역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 복지사회 구현

## 2. 주요내용

- 가. 이웃사촌복지센터의 운영 목적(안 제1조)
- 나. 이웃사촌복지센터의 업무(안 제7조)
- 다. 행복설계사(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 나. 예산조치: 2023년 당초예산 편성
- 다. 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기획예산실-6306(2023.6.2.)]
- 라. 성별영향평가분석: 개선사항 없음[가족지원과-27098(2023.6.2.)]
- 마. 입법예고: 의견없음(예고기간 : 2023.6.23.~2023.7.12.)

##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삶의 질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소외되는 주민 없는 이웃사촌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성주군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웃사촌”이란 서로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어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가까운 이웃을 말한다.
2. “복지”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3. “이웃사촌복지센터”라 함은 이웃이 이웃을 돕고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 이웃사촌복지공동체 구현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성주군 이웃사촌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치) 센터는 성주군 관내에 두며,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다.

제5조(센터의 구성) ①센터의 장은 사회복지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로 임명한다.

- ②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센터 종사자는 이웃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및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6조(설치·운영) ①군수는 복지수요 증가와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소외되는 주민 없는 이웃사촌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웃사촌복지센터장은 마을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내 민·관 기관 및 자원과의 연계·협력으로 공공복지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간 조직역할로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1. 주민조직화 사업
2. 주민역량 강화 사업
3. 마을복지계획 지원 및 수립
4. 위기가구 지원 연계 사업
5. 연계협력 지원체계 구축
6. 기타 지역특화 사업

제8조(행복설계사) 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복설계사를 둘 수 있다.

②행복설계사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등) ①군수는 이웃사촌복지센터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및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 및 단체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지원
3. 선진지 견학 및 주민참여 교육 등

제11조(운영지원) 군수는 이웃사촌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 성주군 이웃사촌복지센터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4. 작성자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 2021. 7.27. 시행 2022.1.28.)에서 위임하고 있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복지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대표협의체 운영 규정 신설(안 제3조)
- 나.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14조)
- 다.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록 규정 신설(안 제15조)
- 라. 의결사항의 처리 규정 신설(안 제16조)
- 마. 사무국 규정 신설(안 제17조)
- 바. 협의체 운영지원 규정 신설(안 제1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23. 6. 23(금) ~ 7. 12(수) / 20일간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기획예산실-6608(2023.6.12.)]
  -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가족지원과-26965(2023.6.1.)]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성주군조례 제 호

##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의 2로 하고, 제3조(대표협의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 담당 및 지원하는 소관기관 공무원, 읍·면 협의체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군수는 공동위원장이 되며,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각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lt;신 설&gt;</p>	<p>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p> <p>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li> <li>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li> </ol> <p>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p> <p>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p>
--------------------	--

**관련법령 발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4. 작성자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 1. 개정이유

상위법규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정비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치정보 요청 및 수당지급 규정 신설(안 제10조의 2항, 제 11조의 3, 4 항)
  - 개인 위치정보 요청 제공 및 이용 추가
  - 비상근무 시 수당 상한 제한 해제 규정 및 휴무 규정 추가
- 나.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안 별표 1 ~ 4)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기획예산실-6610(2023.6.12.)]
- 라. 성별영향평가분석: 해당없음[가족지원과-27543(2023.6.7.)]
- 마. 입법예고: 2023. 7. 27. ~ 2023. 8. 16.

##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의제3,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당 등)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④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10조2(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11조 3,4항 (수당 등)</p> <p>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간 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p> <p>④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별표 2]

자연재난에 따른 재난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비상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
본부장		군수		
차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기획예산실장		
통제관		안전과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인원		5+a명	9+a+β명	17+a+β명
실무반	1) 상황관리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li> <li>○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li> <li>○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li> </ul>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안전과, 가족지원과, 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해당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기업경제과, 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과,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새마을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새마을교통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성주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성주소방서)
	3) 관계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	· 성주 유관기관

##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1항제6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바) 화상회의 준비·운영 사)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다)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라)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마)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바)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사) 텔레비전 방송 모니터링 아)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성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성주군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li> <li>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li> <li>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li> <li>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li> <li>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li> <li>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li> <li>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li> <li>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li> <li>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li> </ul>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li> <li>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li> <li>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li> <li>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li> <li>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li> <li>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li> </ul>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li> <li>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li> <li>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둘 수 있는 곳) 설치·운영의 지도·확인</li> <li>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li> </ul>
	3) 긴급통신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li> <li>나)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li> <li>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 구축</li> <li>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li> </ul>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li> <li>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li> <li>다) 관할 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li> </ul>

	<p>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p>	<p>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p>
	<p>6) 재난수습 홍보반</p>	<p>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 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군·구대책본부 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p>
	<p>7)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p>	<p>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관리</p>
	<p>8) 교통대책반</p>	<p>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육상,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p>
	<p>9)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p>	<p>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p>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의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및 지원 나)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구조·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성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성주군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3]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3 비고 제6호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풍수해(태풍·호우·대설)	가. 비상1 단계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나. 비상2 단계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2)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비상3 단계	1)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가. 비상1 단계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성주군 내륙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성주군 관내에서 최대 진도 V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주의보(이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비상2 단계	1) 지진 관측 결과, 성주군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성주군 관내에서 최대

		<p>진도 VI 이상이 발생한 경우</p> <p>3)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p> <p>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p> <p>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경보”라 한다)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p>
	<p>다. 비상3 단계</p>	<p>1) 지진 관측 결과, 성주군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성주군 관내에서 최대 진도 VI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p> <p>3)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p> <p>4)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p>
<p>3. 가뭄</p>	<p>가. 비상1 단계</p>	<p>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p>
	<p>나. 비상2 단계</p>	<p>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p> <p>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다. 비상3 단계</p>	<p>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4. 폭염</p>	<p>가. 비상1 단계</p>	<p>기상청장이 정하는 육상국지예보구역(이하 “육상국지예보구역”이라 한다)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p>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육상국지예보구역의 10% 이상 40% 미만에서 일 최고 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나. 비상2 단계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 60% 미만에서 일 최고 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다. 비상3 단계	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한파	가. 비상1 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 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비상2 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 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비상3 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 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고

1.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도(道)는 3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특보 또는 대설특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상국지예보구역 중 3개 이상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

[별표 4]

사회재난에 따른 성주군 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기획예산실장		
통 제 관	재난업무 담당 과장		
담 당 관	해당재난담당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alpha+\beta+\gamma$ 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재 난 상 황 총 괄 반 (9명)	가) 상황관리총 괄팀 (3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과 약팀 (6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협업기능 반( $\alpha$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안전과, 가족지원과, 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협업부서, 읍면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기업경제과, 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안전과,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	· 새마을교통과
		자) 의료·방역서 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교통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성주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성주소방서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 성주 유관기관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소속 직원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4. 작성자

안전과 자연재난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제27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 202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계획



# 성 주 군 의 회

# 202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계획

❖ 군정 주요사업장 및 민원 현장 등을 방문하여 의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 시정과 대안 제시

## 방문 개요

- 회 기 : 제276회 성주군의의회(임시회)
- 일 정 : 2023. 10. 13.(금) ~ 10. 18.(수) [4일간]
- 장 소 :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외 13개소
- 참 석 : 15명(의원 8,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2, 의사팀장 외 3)
- 주요내용 :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민원현장 개선사항 및 대책 수립 등

## 사업장 현황

읍 면	사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비 고
계	5개면, 14개소	9개 부서	
성주읍	①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환 경 과	
	②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자원순환사업소	
	③경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안 전 과	
	④별고을 체육공원 내 별고을운동장	체육시설사업소	
	⑤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농 정 과	
	⑥참외원예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및 공판장	농 정 과	
선남면	⑦취곡도로(리도202호선) 정비공사	건 설 과	
	⑧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체육시설사업소	
	⑨성주힐링승마체험장 조성사업 및 인근 낙동강 둔치	관 광 과	
대가면	⑩심산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관 광 과	
	⑪산지일시사용신고 불법훼손 산지 복구현장	허 가 과	산림축산과 배석
초전면	⑫흙실천(동포리) 교량 개체공사	건 설 과	
	⑬백세각 파리장서 기념공원 조성사업	주민복지과	
월항면	⑭월항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농 정 과	

## 세부시간계획

### 10. 13.(금)

시 간 (소요)		사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10:30 ~ 10:40	10'	이 동	• 의회 출발	
10:40 ~ 11:00	20'	성주읍	•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1길 102(예산리 947)	환 경 과
11:00 ~ 11:05	5'	이 동		
11:05 ~ 11:25	20'	성주읍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마을공동 재배온실) 성주읍 삼산리 547	자원순환사업소
		중 식		
13:20 ~ 13:40	20'	초전면	• 흙실천(동포리) 교량 개체공사 초전면 동포리 608-1	건 설 과
13:40 ~ 13:45	5'	이 동		
13:45 ~ 14:05	20'	초전면	• 백세각 파리장서 기념공원 조성사업 초전면 고산리 525-1	주민복지과
14:05 ~		귀 청		

### 10. 16.(월)

시 간 (소요)		사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10:00 ~ 10:05	5'	이 동	• 의회 출발	
10:05 ~ 10:25	20'	성주읍	• 경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성주읍 경산리 354	안 전 과
10:25 ~ 10:40	15'	이 동		
10:40 ~ 11:00	20'	선남면	• 취곡도로(리도202호선) 정비공사 선남면 취곡리 464	건 설 과
11:00 ~ 11:10	10'	이 동		
11:10 ~ 11:30	20'	선남면	•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선남면 관화리 653	체육시설사업소
		중 식		
13:20 ~ 13:40	20'	선남면	• 성주힐링승마체험장 조성사업 및 낙동강 둔치 선남면 용신리 933-1	관 광 과
13:40 ~		귀 청		

**10. 17.(화)**

시 간 (소요)		사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10:00 ~ 10:10	10'	이 동	• 의회 출발	
10:10 ~ 10:30	20'	대가면	• 심산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대가면 칠봉리 900	관 광 과
10:30 ~ 10:40	10'	이 동		
10:40 ~ 11:00	20'	대가면	• 산지일시사용신고 불법훼손 산지 복구현장 대가면 칠봉리 산34-20	허 가 과 (산림측산과 배석)
11:00 ~ 11:10	10'	이 동		
11:10 ~ 11:30	20'	성주읍	• 별고을 체육공원(별고을운동장) 성주읍 참별로 2530(대항리 905-3)	체육시설사업소
		<b>중 식</b>		

**10. 18.(수)**

시 간 (소요)		사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10:00 ~ 10:10	10'	이 동	• 의회 출발	
10:10 ~ 10:30	20'	성주읍	•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성주읍 대항리 634	농 정 과
10:30 ~ 10:40	10'	이 동		
10:40 ~ 11:00	20'	성주읍	• 참외원에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공판장 성주읍 상성로 1394(성산리 1539)	농 정 과
11:00 ~ 11:10	10'	이 동		
11:10 ~ 11:30	20'	월항면	• 월항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월항면 월항로 358(용각리 1131-1)	농 정 과
		<b>중 식</b>		

※ 방문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